



I. 의뢰인

추자면

II. 사건개요

신양항 건설을 조건으로 추자면과 (주)한일고속은 신양항에 대형 여객선을 취항하기로 하는 [추자도 대형 여객선 취항 관련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다.

그러나 신양항의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형 여객선을 확충한 (주)한일고속으로서는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용통과 선박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를 감당하지 못하겠기에 추자면에 신양항 건설이라는 선이행채무를 최고하고 선이행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송달한다.

이에 추자면은 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우리 리걸클리닉은 아래와 같은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III. [추자도 대형 여객선 취항 관련 업무 협약서(MOU)]의 법적 성격

1.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통상 MOU라 함은 정식 계약 체결을 하기 전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MOU의 법적성격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

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즉, MOU, LOI(Letter of Intent), Side Letter 등의 문서는 그 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 약속 또는 합의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바, '.....하여야 한다(shall)', '.....하는 것에 동의한다(agree)' 등의 구속력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cooperate to)',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한다(use best effort to)' 등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된다. 흔히 일반인들은 MOU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살펴듯이 일정한 경우 정식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정식계약서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MOU의 존속기간이나 유효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과도기적, 조건부적 상황에 구속당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본 사안의 해당 MOU

이 사건 협약은 추자면과 (주)한일고속간의 협약으로 추자면 주민뿐만 아니라 추자면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뜻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협약서는 제7조에서 한일고속 측에 강제력을 두는 항목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추자면과 한일고속과의 협력을 다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자면장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협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의 표시일 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IV. 이행지체에 관한 항변

이 사건에서의 신양항의 건설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자도 측은 이행지체의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일고속 측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V. 통고인 측에 발생한 손해와 협약과의 인과관계 여부

이 사업은 '국가 기반 항만건설사업'으로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지 추자면은 아니다. 이사건에서 신양항의 공사는 2015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단시간에 완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통고인측에서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일고속은 대형여객선을 미리 구매하여 자금융통과 유지보수비라는 손해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자면은 이 사건 항만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도 안될뿐더러 손해를 배상할 인과관계도 없다.

VII. 통고인측이 주장하는 협약해제에 대한 항변

통고인 측이 주장하는 항만개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사정의 변경에 따른 손해의 문제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자체를 해제할 사안도 못된다.

VIII.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추자면은 (주)한일고속의 일방적인 이행최고와 이행지체시 해제 통고로부터 항변할 수 있으며 책임을 면할 수 있다.